

## 【 5 】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8. 4. 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불합리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
「지방재정법」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안 제1조 : 지방재정법 제10조 ⇒ 제13조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⇒ 제26조

나. 안 제2조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⇒ 제26조제1항

다. 별표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: 지방재정법 제21조 ⇒ 제26조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 “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” 를  
“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중 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 
제21조의” 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(이하  
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의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영 제21조제1항의” 를 “영 제26조제1항의” 로 한다.

별지제2호서식 본문내용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” 를 “ 「지방재  
정법시행령」 제26조의” 로 한다.

별지제3호서식 제3호 다목 “국가가” 를 “시가” 로 한다.

별지제4호서식 본문내용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” 를 “ 「지방재  
정법시행령」 제26조의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16조의” 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의” 로 한  
다.

제7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” 를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” 로 한

다.

②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의료급여법”을 “「의료급여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의료급여법시행령”을 “「의료급여법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”로 한다.

③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5조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”로 한다.

④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목 “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”를 “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공기업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”로 한다.

⑤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“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의”

⑥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56조제2항의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」 제4조제2항의”로 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</u>		<u>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</u>		
제1조(목적)	----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	제1조(목적)	----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	
제21조의	-----	제26조의	-----	
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제출)		제2조(채무보증신청서의제출)		
① 영 제21조제1항의	-----	① 영 제26조제1항의	-----	
별지 제2호서식 본문		별지 제2호서식 본문		
----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		----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		
의	-----	26조의	-----	
별지 제3호서식 제3호 다목		별지 제3호서식 제3호 다목		
시장은 국가가	-----	시장은 시가	-----	
별지 제4호서식 본문		별지 제4호서식 본문		
----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		-----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		
의	-----	26조의	-----	